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6. 10.(목) 10:00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 
조례안  
(경제환경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06호
- 나. 제 출 자 : 김경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5. 28.

## 2. 제안이유

금천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 책무 (안 제3조)
- 나. 협동조합 간 협력 (안 제5조)
- 다.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(안 제 6조)
- 라. 경영지원, 판로촉진, 시설 지원 (안 제7조~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 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9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5. 28. ~ 6. 2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구청장 책무 (안 제3조)

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
#### 2) 협동조합 간 협력 (안 제5조)

#### 3)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(안 제 6조)

-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성장·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

#### 4) 경영지원, 판로촉진, 시설 지원 (안 제7조~ 제10조)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금천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타당성은 인정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

[시행 2021. 2. 5.] [법률 제16954호, 2020. 2. 4., 타법개정]

**제9조(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)**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,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·운영,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·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③ 중앙회 회장은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